

## 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 일람

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의 종류와 출석정지 기간은, 학교 보건안전법 시행규칙 제 18조·제 19조로 정해져 있습니다. 이하의 감염증에 걸린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감염확대방지의 관점에서, 출석정지가 되므로, 신속하게 학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은 자택에서 휴양 을하고, 등교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분이 「휴양보고서」 를 기입하여,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.

감염증의 종류		출석 정지 기간의 기준 ※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주치의가 판단한다.	
제 1 종	에볼라 출혈열, 크림·콩고 출혈열, 홍터, 남미 출혈열, 페스트, 마르부르크병, 라사 열, 급성회백수염, 디프테리아,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(SARS), 중동 호흡기 증후군 (MERS), 조류 독감	치유될 때까지	
제 2 종	독감	발병 후 (발병 다음날을 1 일째로 한다) 5 일을 경과하고, 또한 해열 후 2 일을 경과할 때까지	
	백일해	특유의 기침이 없어질 때까지, 또는 5 일간의 적절한 항균성 물질 제형에 의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	
	홍역 (하시카)	해열 후 3 일을 경과할 때 까지	
	유행성 이하선염 (볼거리)	이하선, 턱밑샘 또는 설하선의 부종이 발열한 후 5 일이 경과 되고, 또한 전신 상태가 양호해 질 때까지	
	풍진	발진이 사라질 때까지	
	수두 (미즈보우소우)	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	
	인두결막염	주요 증상이 사라진 후 2 일이 경과할 때까지	
	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	발병 후 (발병 다음날 또는, 무병상태의 경우에는 검체를 채취한 날의 다음날을 1 일째로 한다) 5 일을 경과하고, 또한 병상이 경쾌* 한 후 1 일이 경과될 때까지 *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해열, 또한, 호흡기의 상태가 개선 경향인 경우	
	결핵	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	
수막염 균성 수막염			
제 3 종	콜레라, 세균성 이질, 장티프스, 팔라티푸스	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	
	장관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		
	유행성 각결막염		
	급성 출혈성 결막염		
	기 타	용련균 감염증	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
		바이러스성 간염	
		감염성 위장염	
		마이코 플라즈마 감염증	
		RS 바이러스 감염증	
		기타, 아데노 바이러스 감염증	
	감 염 증	※폴 열·유행성 각결막염·위장염 이외	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 ※결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
		전염성 홍반 (사과병)	
		헬광기나	
		수족구병	
대상포진			
기타, 감염증 ( ) *1	의사로부터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		

\*1 「학교에서 예방해야 할 감염증의 해설 <헤이세이 30년 3월 발행>」 공익재단법인 일본학교 보건회를 참조해 주십시오.